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순기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

2216

발의일자: 2022. 9. 6.

발 의 자 : 고영찬, 정순기, 장규권

정재동, 엄샛별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"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"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

(안 제3조제2항제2호 → 안 제3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및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2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2. 9. 7. ~ 9. 14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	2
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재경위원회	2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	<u><삭 제></u>
소관에 관한 사항	
3. 복지건설위원회	3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	소관에 관한 사항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'08.03.06., 2014.12.30., 2022.1.12.>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)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상임위원회를 두며,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12.30.>

- 1. 의회운영위원회 : 6명 이내<개정 2014.12.30.>
- 2. 행정재경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'08.03.06., 2014.12.30.>
- 3. 복지건설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'08.03.06, 2012.07.17., 2014.12.30.>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-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- 1. 의회운영위원회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다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라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<신설 2022.1.12.>
- 2. 행정재경위원회<개정 2008.03.06.>
- 가.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9.1.16.>
- 나.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<삭제 2014.12.30., 개정 2022.8.15.>
- 다.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3.1.18, 2019.12.31., 2022.8.15.>
- 라.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'08.03.06, 2010.10.11, 2013.1.18, 2019.1.16., 2022.8.15.>
- 마.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.18>
- 바.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.18>
- 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<신설 2019.1.16.>
- 3. 복지건설위원회 <개정 '08.03.06, 2018.1.15>
- 가.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'08.03.06, 2010.10.11, 2019.1.16., 2019.12.31.>
- 나.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9.12.31., 2022.8.15.>
- 다.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<개정 2010.10.11, 2013.10.31, 2019.12.31.>
- 라. 삭제 <2019.1.16.>
- 마. 삭제 <2019.12.31.>
- 바.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1.17., 개정 2022.8.15.>
-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(이하"의장"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"상임위원"이

- 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- 제5조(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 - ② 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개정 2014.12.30.>
- **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**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다만,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② 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4.12.30.>
- **제7조(상임위원장)**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 -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- **제8조(특별위원회)**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22.1.12.>
 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 소요경비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, 활동기간,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>
 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, 2022.1.12.>
 - ④ 예산안, 결산, 예비비 지출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<신설 2022.1.12.>
 - 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신설 2022.1.12.>
 -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.12.>
 - ⑦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
- [종전 제4항에서 이동]<개정 2014.12.30., 2022.1.12.>
- **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)**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**제10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 에 보고한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

를 감독한다.

- **제12조(부위원장)**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4.12.30.>
- 제13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.<개정 2014.12.30.>
 -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,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12.30.>